

#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 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( 평창읍 주민센터 담당자 : 이 수현 문의전화 : 033-330-2686 )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우**	우** 1958-03-10	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웃상리길	무단전출
유**	유** 1959-08-27	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웃상리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2018년 03월 16일

